

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안내

2010.2.4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 고객 및 거래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상기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고객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안내

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(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)에 따라,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 이상 현금(외국통화 제외)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,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